

倉富勇三郎文書

김효진 | 대한민국학술원회원

1. 서설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郎, 1853~1948)란 누구인가?

일본에서도 이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일본의 근현대사나 문학을 연구하는 몇 사람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일본인도 별로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왜 한국인이 이제 새삼스레 언급하는가? 구라토미는 1907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법무 차관을 비롯하여 합방 후에는 조선총독부 사법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1913년 귀국해서는 추밀원 의장까지 지냈으며, ‘조선 식민지화의 중추부에 있던 인물’¹⁾이다. 우메 겐지로(梅謙次郎)가 조선인의 소유권, 관습 등 민사법분야에서 조선 통감부의 식민지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힘썼다면 구라토미는 사법제도의 골격과 형사법분야에서 이를 추진하는 데 애쓴 인물이다.

금년은 국권상실 100주년, 한국전쟁 60주년, 4·19혁명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근현대사를 되돌아보는 뜻 깊은 한 해가 된다. 특히 한일합방 100년

1) 新藤東洋男, 2000, 『浮羽地方の近現代史』, 浮羽-三井教育耳納會, 46쪽.

을 계기로 하여 한국의 법제는 어떻게 붕괴되었으며, 식민지화되었는가를 구라토미라는 한 일본인 사법관료의 활동을 통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처럼 통감부와 조선총독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에 대한 연구는 법제도의 형식적인 연구보다 중요하며 또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라토미의 여러 활동 중 우리는 그가 한국에 체류한 1907년부터 1913년 9월까지의 한국 사법에 한정한다.²⁾

여기에 소개하는 자료는 필자가 2005년부터 1년간 일본 와세다(早稻田) 대학에 교환연구원으로서 체류하는 동안에 동 대학 도서관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수집한 것들이다. 특히 국회도서관의 복잡한 이용절차로부터 『倉富勇三郎文書』의 복사와 마이크로필름의 판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로 도와 주신 쓰쿠바(筑波) 대학의 고쿠분 노리코(國分典子) 교수의 헌신적인 도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 생애와 저술

구라토미의 생애와 업적에 관하여는 일본의 크고 작은 인명사전에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³⁾ 이 중 지방사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신도 도요오(新藤東洋男)의 『浮羽地方の近現代史』⁴⁾가 대표적인 것이며, 그 밖에 고가 에키조(古賀益城) 편, 『(元樞密院議長)倉富勇三郎博士』가 문헌으로서 소개되고 있지만 불확실하며 입수하기도 어렵다.⁵⁾

2) 한국 문헌은 문준영, 2007, 「통감부재판소 설치에 관한 자료—倉富勇三郎와 梅謙次郎의 의견서」(자료), 『법사학연구』 36, 331~366쪽; 남기정 옮김, 1978, 『일제의 한국사법부 침략실화』, 육법사, 215~219쪽; 임상혁, 2010, 「1908년 「민사소송법안」의 성립과 그 성격」,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14(1), 375~393쪽 참조.

3) 인명사전 목록은 이 글의 참고문헌에 열거되어 있다.

4) 新藤東洋男, 2000, 앞의 책, 46~84쪽.

5) 예컨대 『日本近現代人名辭典』, 2001, 吉川弘文館, 382쪽에서 구라토미 항목을 집필한 유

1) 생애

그에 관한 서술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일본의 사법관이며 정치인으로 법학박사. 1853년 7월 16일 후쿠오카현(福岡縣)에서 태어나 1877년 9월 사법성 법학교 속성과에 입학하였다.⁶⁾ 이 학교의 정칙과(正則科)는 수업 연한이 8년으로 너무 길어서 사법관의 단기양성을 목표로 속성과 2년제를 신설하였다. 여기의 법학교육은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후일 도쿄(東京)대학으로 합병된다.⁷⁾ 구라토미는 1879년 11월 이 속성과를 1기생으로 졸업한다.⁸⁾

이듬해인 1880년 2월 판사보, 1890년 10월부터 1891년 3월까지 감옥관 연습소(監獄官 練習所)에서 형법 강의, 1892년 형법개정 심사위원이 된다. 1898년에는 사법성 민형국장, 1902년 대심원 검사, 1903년부터 1904년에는 오사카(大阪)와 도쿄의 공소원 검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1907년에는 법률 취조위원(取調委員)이 되고 1907년 6월 13일자로 법박회(法博會)의 추천으로 법학박사의 학위를 받기도 하였다.⁹⁾

이 마사오미(由井正臣) 씨에게 필자(김효진)가 인용한 고가(古賀)의 책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문의한 결과 오래되어 기억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고가의 구라토미 전기는 일본국회도서관이나 와세다대학 도서관에서도 소장하고 있지 않다.

6) 상세한 것은 手塚豊, 「司法省法學校小史」, 『法學研究』(慶應大) 第40卷 第6・7・11號 및 手塚豊, 1998, 「明治法學教育史の研究」, 『手塚豊著 集』 第9卷, 慶應義塾大學出版會, 3~154쪽, 속성과에 관하여는 108쪽 이하 참조.

7) 법학교는 프랑스인 브아소나드(Boissonade)와 아페르(G. Appert)의 영향으로 교과목에서도 프랑스법이 중요시되었고, 호세이(法政) 대학의 전신인 와부쓰(和佛)법률학교에서도 교명 그대로 프랑스법학 중심이었다. 브아소나드에 관하여는 깃카와 쓰네오 외, 2009, 『일본 형법이론사의 종합적 연구』, 히일테 외 공역, 동아대학교 출판부, 17~31쪽; 法政大學大學史資料委員會 編, 1992, 『法律學の夜明けと法政大學』 참조. 한편 주요(中央) 대학의 전신인 英吉利法律學校는 교명 그대로 영국법에 중점을 두었다. 문헌은 山崎利男, 2010, 『英吉利法律學校叢書—明治前期のイギリス法教育』, 中央大學出版部 참조.

8) 手塚豊은 「법학교 속성과 일람」(1884)에 구라토미의 이름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을 졸업 성적의 석차라고 보아 수석졸업이라고 한다. 手塚豊, 1998, 앞의 책, 113쪽. 동기생 중 永島巖도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9) 『法曹百年史』, 1969, 法曹公論社.

한편 조선 통감부는 1907년 7월 21일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24일에는 이른바 정미칠조약(한일협정)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서 일본인을 한국의 관리로 정식 임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그리하여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초청으로 구라토미는 1907년 한국으로 건너와 9월 19일자로 법무 차관(통감부 참여관)으로 임명된다.¹⁰⁾ 같은 해 10월 법무 차관의 자격으로 법률기초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¹¹⁾ 1909년 12월 법전조사국의 위원장이 되고 한국의 관습조사에 기초하여 우메 겐지로(1860~1910)¹²⁾를 민법기초자로, 구라토미를 형법기초자로 선정하였다. 그후 통감부 참여관과 사법청 장관을 역임하였다. 한일합방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사법부 장관과 법제국장을 역임하였다.

10) 관보 제3877호 1907년 9월 21일자

11) 정공식, 1991, 「한말 법률기초기관에 관한 소고」, 박병호교수 환갑기념논문집 『한국법사학논총』, 박영사 및 정공식, 2002, 『한국근대법사고』, 박영사 참조.

12) 우메에 관하여는 李英美, 2005, 『韓國司法制度と梅謙次郎』, 法政大學出版局; 이 책에 대한 문준영의 서평, 2007, 『법사학연구』 35, 409~424쪽 및 이영미 편역, 2007, 『근대한국 법과 梅謙次郎』, 『동아법학』 39, 289~380쪽, 『日本近現代人名辭典』, 155쪽; 梅文書研究會 編, 2000, 『法政大學圖書館所藏 梅謙次郎文書目錄』, 法政大學ボアソナード記念現代法研究所, 259쪽; 法政大學大學史資料委員會 編, 1992, 앞의 책, 315~328쪽; 野島幹郎, 1991, 「梅謙次郎博士, 顯彰の障 (1)-(4)」, 『法律のひろば』 第44卷 1-4號; 内藤正中, 1991, 「韓國における梅謙次郎の立法事業」, 『島大法學』 35-3, 1~25쪽; 中村哲, 1992, 「梅謙次郎の法思想」, 『法學志林』 89-2; 向井健, 1974, 『梅謙次郎, 日本の法學者』, 日本評論社, 73~96쪽 등이 있다.

우메의 저작목록은 岡孝·江戶恵子, 1985, 「梅謙次郎 著書および論文目錄—その書誌學的研究」, 『法學志林』 第82卷 3·4號, 137~214쪽 및 梅文書研究會 編, 2000, 앞의 책, 259쪽 참조. 이 저작목록에 누락된 것을 추가하여 岡孝 교수는 우메의 저작 전체를 CD로 만들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회도서관과 동아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김효전, 2002, 「입법의 근대화」, 『인권과 정의』 2002년 9월호 및 김효전, 2006, 『근대한국의 법제와 법학』, 세종출판사, 316~356쪽에 재수록; 内藤正中, 1991, 앞의 논문, 1~25쪽; 川崎万藏, 1951, 「朝鮮における梅博士—立法事業, 舊慣調査等に因みて」, 『法學志林』 49-1 참조. 위의 川崎万藏은 이 부동산조사회의 보좌관보였으며, 통역관은 우메가 설립한 와부쓰법률학교(현 호세이대학의 전신)의 제자인 석진형(石鎭衡, 1877~1946)이었다.

귀국하여 1913년 9월 야마모토 곤베에(山本權兵衛) 내각의 법제국 장관에 취임하고 다음 해 귀족원 의원으로 직선되었다. 1920년부터는 제실회계(帝室會計)심사국장, 추밀고문관을 겸임하고, 1925년 와카쓰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郎) 내각 시대에 추밀원 부의장을 거쳐 의장이 되었다. 1926년 제실제도심사(帝室制度審査)에 관한 공로로 남작이 수여되었다. 그후에도 의정관, 왕공족심의회(王公族審議會)의 총재 등에 있다가 1934년 퇴관하고 향리인 후쿠오카현 우키하군 후나코시촌(浮羽郡 船越村, 현재의 田主丸町)에서 1948년 1월 26일 96세로 사망하였다.¹³⁾

그는 아들 3 형제를 두었으며, 장손은 다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손자 구라토미 고지(倉富恒二, Dr. Koji Kuratomi) 씨가 규슈(九州)의 오카와시 사케미(大川市 酒見)라는 곳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로 개업 중이다.¹⁴⁾

한편 일본의 한 인명사전은 구라토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사법관이며 정치인으로 법학박사이다. 1853년 7월 16일 福岡현에서 태어나 1879년 사법성 법학교를 졸업하고 판사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성 민형부장, 참여관, 대심원 검사, 大阪과 東京의 공소원 검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1907년 한국으로 건너와 1907년 9월 19일자로 법무 차관으로 임명된다. 1907년 10월 법무 차관의 자격으로 법률기초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1909년 12월 법

13) 이상은 『日本人名大辭典』[現代], 1979, 平凡社, 288쪽에 따른 서술이다. 기타 純官僚型·山浦貫一, 1926, 『政局を繞る人々』, 四海書房 및 최종고, 1994, 『한국 근대법의 형성과정』, 『한국문화』 1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30~431쪽 참조.

14) 필자는 2002년 1월 규슈 대학에 자료 수집차 체류하던 중 후쿠오카현청, 후쿠오카현립도서관, 다누시마루정(田主丸町) 사무소 등을 수소문하여 구라토미 유자부로의 후손인 구라토미 고지 씨의 주소를 알아내고 그와 전화 통화를 나누었다. 그는 구라토미의 사진을 비롯하여 한국과 관련된 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서로 시간이 없어서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그는 다음 기회를 약속하였다. 구라토미의 후손을 만난 경위와 자료에 대해서 필자는 2002년 4월 27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강의실에서 열린 한국 법사학회 제62회 정례학술발표회에서 보고하였다.

전조사국의 위원장이 된다. 1909년에는 법학박사의 학위를 받았다. 이후 통감부 참여관과 사법청 장관을 역임하였다. 한일합방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사법부장관과 법제국장을 역임하였다.

귀국하여 1913년 야마모토(山本) 내각의 법제국장 장관에 취임하고 다음 해 귀족원 의원으로 칙선되었다. 1920년부터는 帝室會計심사국장, 추밀고문관을 겸임하고 1925년 추밀원 부의장을 거쳐 의장이 되었다. 1926년 帝室制度審査에 관한 공로로 남작이 수여되었다. 그후에도 의정관, 王公族審議會의 총재 등에 있다가 1934년 퇴관하고 향리인 福岡縣 浮羽郡 船越村에서 1948년 1월 26일 96세로 사망하였다.¹⁵⁾

구라토미에 관하여는 일본의 인명사전에 대부분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대체로 서로 비슷하다.

2) 저술

구라토미는 체계적인 저술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의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의 짧은 글들을 남겼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정리하면 연구에 편리할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1. 『戶籍法詳解』, 1898(明治 31), 16쪽.
2. 田中正身 編, 1908, 『改正刑法釋義』(上·下), 西東書房, 序文(1994年 信山社 復刻版) 3쪽(『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35·36).
3. 「韓國司法制度の梗概」, 『東洋時報』 第130號, 1909年.
4. 「韓國司法及警察の委任に關する覺書」, 『國家學會雜誌』 第23卷 8號, 1909年.
5. 『慣習調査報告書』, 1910年(1995年 龍溪書舍 復刻), 정궁식 옮김, 1992/

15) 『日本人名大事典』, 288쪽.

2000, 『관습조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6. 「司法機關の設備と世評」, 『滿韓之實業』 第56號, 1910年, 7~8쪽.
7. 「朝鮮司法制度の改正に就いて」, 『朝鮮及滿洲』 第50號, 1912年, 17~18쪽.
8. 「朝鮮の司法制度(新法令)」, 『國家學會雜誌』 第26卷 5號, 1912年.
9. 「朝鮮總督府警察犯處罰規則に就いて」, 『軍事警察雜誌』 第6卷 9·10·11號, 1912年.
10. 「朝鮮司法制度の沿革及現狀」, 『朝鮮公論』 第1卷 第4號, 1913年 7月, 22~24쪽.
11. 「朝鮮人犯罪の變遷」, 『朝鮮及滿洲』 第73號, 1913年 8月.
12. 神尾太治平著, 1913, 『朝鮮不動産證明令義解』, 日韓書房, 430쪽(題辭: 이 책에는「司法部長官 法學博士 倉富勇三郎閣下 題辭」 외에 내무부장관, 경기도 장관 등 여러 사람의 제사가 붙어 있다).¹⁶⁾
13. 「司法省關係ノ法律制定沿革略誌」, 『帝國法曹大觀』, 1915年, 39~75쪽.
14. 『刑法沿革綜覽』, 1923年.
15. 「朝鮮に於ける政治の回顧」, 『朝鮮』 第125號, 1925年 10月, 8~10쪽.
16. 「裁判所構成法 施行前後の回顧」, 『法曹會雜誌』 第17卷 11號, 1939年.
17. 「朝鮮司法制度に關する私見」, 『司法協會雜誌』 第19卷 11號, 1940年(座談會 所收), 남기정 옮김, 1978, 『일제의 한국사법부 침략실화』, 215~219쪽.

[기타]

1. 『京城日報』 1909년 1월 1일자 「新年所感」.
2. 『法律新聞』 1906년 6월 5일자 및 1909년 7월 30일자.
3. 「統監府時代より併合時代の中心人物(寫眞)」, 『朝鮮及滿洲』 第168號, 1921年 11月(倉富, 渡邊暢, 國分三亥 사진).

16) 『매일신보』 1913년 2월 15일자 광고

3. 한국에서의 활동

구라토미의 한국에서의 활동을 당시의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¹⁷⁾

먼저 한국 법부는 1907년(융희 원년) 8월 법부 차관에 홍긍섭(洪肯燮)을 임명하였으나 두 달도 못되어 일본인 구라토미를 차관으로 임명하였다.

● 三次官新任說 學部次官 李圭桓氏가 京畿觀察使로 轉任 ㄹ았다는디 其代 에는 該部 參與官 倭孫一氏가 被任 ㄹ고 宮內部 次官 金玉鉉氏는 制度局長으로 轉任 ㄹ았는디 其代 에는 鶴原定吉氏가 被任 ㄹ고 法部次官을 正三品 洪肯燮氏가 被任 ㄹ다더라.¹⁸⁾

여기서 보듯이, 학부에는 일본인 다와라 마고이치(倭孫一, 1869~1944)¹⁹⁾가 임명되고, 궁내부에는 역시 일본인 쓰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황성신문을 비롯하여 학부에는 일본인 고문이나 차관이 필요 없다고 하여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²⁰⁾

학부에는 그후 일본인 시데하라 히로시(幣原垣, 1870~1953)²¹⁾가 한국 정부의 학정(學政) 참여관이 되어 교육행정에 관여하였다.

법부 차관은 일본인 우메 겐지로가 내정되었다는 다음과 같은 보도가 나간 지 하루도 못되어 구라토미로 바뀌어 보도되었다.

● 法次有人 日本 梅兼 博士로 法部 次官을 任命 ㄹ기로 內定되얏는디 該氏가 目下 東京에서 我國法典을 起艸中이라더라.²²⁾

구라토미에 관한 신문보도는 다음과 같다.

● 法部次官被命 日本 大審院 檢査總長 倉富勇三郎氏가 法部次長을 被命 ㄹ았더라.²³⁾

● 法次室修理 法部次官 倉富勇太郎氏가 今日에 伊藤 統監과 同伴 ㄹ아 入城 ㄹ는디 法部에서 ㄹ 次官室을 權定 ㄹ 次로 該部 事務官室을 昨日부터 修理 ㄹ다더라.²⁴⁾ [필자 주-倉富勇三郎의 오식임]

● 法次日間視務 法部 次官 倉富勇三郎氏가 再昨日에 伊藤 統監과 同伴 入城 ㄹ았는디 日間부터 仕進視務 ㄹ다더라.²⁵⁾

● 法次歸國內容 法部次官 倉富勇三郎氏가 該部 職員과 各 裁判所職員을 日本人으로 聘用 ㄹ기 爲 ㄹ아 日間 本國으로 渡去 ㄹ다는디 往還期日은 五拾日間이오 旅費는 一千九百七拾 圓으로 豫算 ㄹ았다더라.²⁶⁾

17) 이하의 서술은 필자가 『인권과 정의』 2002년 12월호에 발표한 「사법권의 개혁과 붕괴과정」(하)에 소개한 구라토미에 관한 부분을 수정 증보한 것이다.

18) 『황성신문』 1907년 8월 10일자.

19) 다와라는 시마네(島根)현 출신으로 도쿄대학을 졸업한 관료이다.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부총재를 지냈다. 『コンサイス 人名辭典』, 1981, 三省堂, 715쪽; 佐藤由美, 2000, 『植民地教育政策の研究—朝鮮 1905~1911』, 龍溪書舍, 연구 정보는 伊藤 隆·季武嘉也編, 2005, 『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2, 吉川弘文館, 147쪽 참조.

20) 예컨대 『황성신문』 1907년 10월 20일자 논설 「학부에는 外人의 雇用이 無益」 참조.

21) 시데하라는 오사카 출신이며 도쿄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건너왔다. 『コンサイス 人名辭典』, 543쪽. 저서로 『日露間の韓國』(1905, 博文館)이 있다. 그의 동생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1872~1961)도 구한말 외교관으로 근무한 일이 있다. 『コンサイス 人名辭典』, 542쪽 참조.

22) 『황성신문』 1907년 9월 20일자.

23) 『황성신문』 1907년 9월 21일자.

24) 『황성신문』 1907년 10월 3일자.

25) 『황성신문』 1907년 10월 5일자.

26) 『황성신문』 1907년 12월 22일자.

● 法典局設賓 政府에서 法典調査局을 設賓하고 法學博士 梅謙次郎氏로 顧問을 定하고 法府次官 倉富勇三郎氏로 委員을 任命하고 民法, 刑法, 訴訟法 等を 調査하다더라.²⁷⁾

● 與角不 法部次官 倉富勇三郎氏가 司法官選任과 其他 事件으로 歸國했었다 함은 前報에 掲載했었거니와 司法官은 日本內地에서 資格이 有者에 學術品格의 優者를 選擇되되 現今 資格이 有者로 韓語를 曉解하는 人을 求得함이 其 代에 漢文의 知識을 有함이 第一 要件이기로 法에서 通譯의 補助를 得야 事務를 處理되 書類의 調査 等은 아모조목 補譯의 補助를 要치 아니함을 希望하나 然나 青年法官에 漢文이 不足하고 老法官에는 漢文이 有餘者一多되 將來 韓語를 解得기에는 年少者가 必要故로 其間에 拾分 注意를 事項이 有즉 折半은 漢文이 有餘老法官中에서 擇任하고 折半은 將來 韓語解得를 希望이 有青年法官을 採用리라더라.²⁸⁾

한편 구라토미는 1907년 12월 법관양성소 졸업식에 여러 인사들과 함께 참석한 기록이 보인다. 그 모습을 보성전문학교 교우회에서 편집한 『法政學界』는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 官立法官養成所는 客年 十二月 二十七日 下午 一時에 第六回 卒業式을 該所 豫備科 講堂에서 設行했었다 其 儀式과 節次가 整制하고 卒業諸氏의 齊齊 容貌가 頗히 人으로 好감 有케 더라. 그 概況을 定刻에 法部大臣 高永喜氏, 檢事總長 國分三亥氏, 法部次官 倉富勇三郎氏, 刑事局長 金洛憲氏, 民事局長 李始榮氏 其他 法部 裁判所 官吏 多數가 式場 左右에 羅立하고 又 卒

業生 五十三人은 式場 正面에 整列後에 該所長 野澤武之助氏가 登壇하여 簡單式辭를 述後에, 大皇帝 陛下의 御眞影을 奉開하고 來賓 及 學員이 最敬禮를 行後에 教授 石鎮衡氏 語를 奉讀하고 又 最敬禮를 行後에 御眞影을 奉閉하고 卒業證書 及 賞品을 授與後에 該所長이 卒業生의 對야 簡單訓示演說을 試하고 法部大臣이 祝辭를 述하고 法部次官과 檢事總長이 勤勉의 演說을 試했더라. 然한대 優等이 八人이요, 及第가 四十五人이요, 優等 第一番은 李豐求氏요, 第二番은 金淇正氏러라. 本記者는 該 五十三人 卽 光榮이 有卒業證書를 受한 諸氏에게 對야 一言을 寄노니 諸君은 今日로 比는 學校에 在學學員이 아니오 社會上에 完全一分子이다. 換言하면

諸君은 學校 在時는 學校의 學則이나 守하고 勉強하면 茲에 責任이 極거니와 一次 學校의 業을 卒하고 社會에 一出하면 卒然히 天地가 廣濶하여 그 捕着를 바를 不知지리다. 是以로 一個 標準을 心裏의 定함을 要하지니 此는 無他라. 其 學得 智識으로 社會를 如何히 하면 利를 得는 決心이 是라. 願컨대 諸君은 此를 不忘지이다.²⁹⁾

이 기사에서 보듯이, 법무대신 고영희(高永喜, 1849~1916),³⁰⁾ 검사총장 고쿠부 산가이(國分三亥, 1863~1962)³¹⁾ 법무차관 구라토미 유자부로, 형사국장

29) 『법정학계』 제20호, 31~33쪽. 최종고, 1990, 『한국법학사』, 85쪽에도 일부 수록되어 있으나 오자가 많다.

30) 고영희는 1881년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왔고 이듬해 일본 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올 때 차비역관이 되었다. 참의교섭통상사무, 농상공부협판, 주일 특명전권공사 등을 거쳐 1896년(건양 1년) 농상공부 대신 서리가 되고, 독립협회가 조직될 때 발기인으로 참여, 1898년 탁지대신이 되었다. 1907년 이토 히로부미가 헤이그 밀사 사건을 구실로 고종의 양위를 강요할 때 이에 반대한 일도 있으나 한일합방에 찬성한 친일파로서 합방 후 일본의 자작이 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 엮음, 2009, 『친일인명사전』, 151~153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엮음, 1999, 『한국인물대사전』, 91~92쪽, 『한국인명대사전』, 1995, 신구문화사, 29쪽 등 참조.

31) 문헌은 野村正男, 1996, 『法窓風雲錄』(上卷), 朝日新聞社, 18~30쪽 참조. 고쿠부는 일본의 사법관료이며 호는 漸庵. 1863년 12월 오카야마현 다카하시시(岡山縣高梁市)에서 출생하였으며, 1885년 사법성 법학교를 졸업한 후 1887년 검사로 임명되고

27) 『황성신문』 1907년 12월 25일자.

28) 『황성신문』 1908년 1월 9일자.

김낙헌,³²⁾ 민사국장 이시영, 법관양성소장 노자와 다케시노스케(野澤武之助),³³⁾ 교수 석진형(石鎭衡, 1877~1946)³⁴⁾ 등이 참석하고 있다.

다시 신문에 보도된 구라토미의 동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多數法官渡來 法部次官 倉富勇三郎氏が 目下 我國 法院 各 裁判所에 任用 日本 司法官 二百二十三人과 裁判所 書記 三百二十三人을 選擇 事로

이후 요코하마(橫濱)·오카야마 등지의 검사와 검사정을 거쳐 오사카 공소원 검사, 오사카 지방재판소 검사정 등을 역임하였다. 1908년 한국에 건너와서 통감부 검사총장이 되었다. 한일합병 후인 1910년에는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장과 총독부 사법부 장관을 겸임하였다. 1920년 퇴관 후에는 은행 두취, 궁중 고문관 등을 역임하고 1927년에는 이송학사(二松學畝) 이사장과 명예교수가 되었다. 1962년 5월 1일 사망하였다. 이상 『日本人名大事典』 [現代], 308쪽 참조.

여기서는 “한국 정부의 초빙에 의해서 한국정부 검사총장이 되다”라고 적고 있다. 당시 통감부에서 근무한 일본인들은 대부분은 자칭 “한국 정부의 초빙에 의해서”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인명사전에서는 “한국 정부의 초빙에 의해서 한국 정부 검사총장이 되고”라고 적고 있다(『日本人名大事典』[現代], 308쪽). 그의 논설로는 國分三亥, 1909, 「司法權委任に就て」, 『朝鮮』 41; 1910, 「併合と司法制度との關係」, 『朝鮮』 31; 1911, 「司法事務と同化」, 『朝鮮』 45; 1914, 「母國と朝鮮との共通法規の必要を論ず」, 『朝鮮及滿洲』 78; 1918, 「共通法に就て」, 『朝鮮彙報』; 1918, 「朝鮮の司法制度改革と將來の希望」, 『朝鮮公論』 第6卷 6號 등이 있다. 문헌은 野村正男, 1966, 앞의 책, 18~30쪽, 「朝鮮司法界の往事を語る座談會」(1940年 8月 15日 開催), 『司法協會雜誌』 第19卷 10·11號 別冊. 이 책의 한국어 번역 남기정 옮김, 1978, 앞의 책, 24쪽 이하 참조.

32) 김낙헌(1874~1919)의 호는 研農. 법부 주사로 관계에 입문, 평리원 검사, 법부 참서관, 법관양성소 소장, 법부 형사국장 역임. 저서 『중환록』이 있다. 김효전, 2006, 앞의 책, 515~518쪽; 최종고, 1990, 「김낙헌의 「중환록」」, 『법사학연구』 11, 246~243쪽; 원문은 240~205면 참조.

33) 상세한 것은 김효전, 2010, 「野澤武之助와 근대 한국의 법학교육」, 『법사학연구』 41, 65~105쪽 참조.

34) 석진형은 1902년 지금의 호세이 대학의 전신인 와부쓰법률학교를 졸업한 후 1904년 군부 군법과 주사로 취직. 1905년 우메의 통역이 되고 같은 해 법관양성소 교관. 1906년 6월 내부 참서관. 1909년 법학교 조교수. 1913년 경성전수학교 사임(『매일신보』 1913년 3월 23일자). 1921년 전남도청의 참여관, 1926년 전남도지사 등을 역임한 사람이다. 저서로 『채권법』(1907)과 『평시국제공법』(1907)이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엮음, 2009, 앞의 사전; 최종고, 2007, 『한국의 법률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85~100쪽은 오자가 많다.

司法省과 交渉中인디 該 多數人을 現在 司法部內에서 一時에 選拔 事로 司法機關에 運用에 有碍 事로 今明年度 二個年에 半數式 採用 事로 決定 事로 來 五月 以內에 司法官 百十餘名과 書記 六十餘名을 選任 事로 터인디 各 地方裁判所 判檢事 中에서 韓國에 渡來 事를 希望 事로 司法省 職員 課長에게 請願 事로 者가 百四十餘名이오 辯護士 中에 請願 事로 者가 三十餘名이라더라.³⁵⁾

● 法官聘日 大審院과 控訴院과 地方區裁判所를 施設 事로 法官을 聘來次로 法部次官 倉富氏가 已往 渡日 事로 왔거니와 該씨가 五月 二十日頃에 渡來 事로 各 法官을 排置할터인데 各裁判所 開廳式은 六月 一日로 豫定하였더라.³⁶⁾

● 法官願乎 日本留學生 玄奘健氏가 法律을 卒業 事로 該 地方裁判所에서 見習을 結了 事로 왔는디 該氏가 法官에 志願이 有 事로 法部次官 倉富勇三郎氏가 東京에 滯在中이니 該氏의게 交渉措處 事로 學務局長 尹致昨씨가 日本留學生 監督 申海永씨에게 公函 事로 왔더라.³⁷⁾

여기의 현석건은 1882년생이며 1907년 일본 메이지(明治)대학을 졸업하고 1908년 6월 판사로 임명되었으며 1910년 6월에 퇴직하여 변호사가 된 사람이다.³⁸⁾ 유학생 감독 신해영(1870~1909)은 학부 편집국장, 한성사범학교와 보성전문 교장 등을 지낸 사람이다. 현석건은 구라토미의 추천으로 판사가 되었는지 대졸 학력으로 되었는지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으나, 그와 교섭하라는 신문기사가 당시의 사정을 말해 주고 있다.

● 法次旅費 法部 次官 倉富勇三郎氏가 日本에 往還 事로 旅費不足額 八百圓

35) 『황성신문』 1908년 1월 19일자.

36) 『황성신문』 1908년 3월 7일자.

37)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25일자.

38) 『朝鮮人名資料事典』 第1卷, 163쪽.

을 度支部에서 豫備金 中으로 支出 ㄷ었다더라.³⁹⁾

● 附○情態 內閣에서 각 區域裁判所 法官敍任事件을 協議 ㄷ는데 韓日人을 相半任用하기로 公議가 不壹 ㄷ고 法部 次官 倉富勇三郎氏도 半數敍任 ㄷ는 것 시 妥當 ㄷ줄노 發論 ㄷ었다는데 惟獨 法部大臣 趙重應氏가 反對 ㄷ야 日 韓國卒業生은 學識이 不足 ㄷ니 不可敍用이라 ㄷ었다더라.⁴⁰⁾

조중응(1860~1919)은 순종황제의 허락을 받아 본부인 외에 일본인 부인을 두어 일부이처제의 일화를 남기기도 한 사람이다.⁴¹⁾

● 法典制定 內閣에서 諸法典을 制定 ㄷ기 爲 ㄷ야 法典調査局을 設 ㄷ고 舊 習과 其他 事件을 調査中이오 民事 及 刑事件 訴訟法도 該局에서 調査制定 ㄷ터인디 該 新設法은 六月 以內에 ㄷ 制定키 不能 ㄷ다 ㄷ디 法部에서 松寺, 安住 兩 書記官이 起草 ㄷ 案件에 依 ㄷ야 倉富 次官, 民刑事 兩局長, 松寺, 安住 兩 書記官, 大審院, 京城控訴院, 京城地方裁判所 各 長官, 檢査總長, 各 檢査長 等이 會同 ㄷ야 商議中인 故로 未久에 制定 領布 ㄷ다더라.⁴²⁾

여기의 松寺란 마쓰테라 다케오(松寺竹雄)이며 1910년 경성지방법관소 검사로 임명되었으며 1929년에는 고등법원 검사장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사법에 관하여 몇 가지 글을 쓰기도 하였다.⁴³⁾ 安住는 아즈미 도키타로(安住

39) 『황성신문』 1908년 4월 12일자.

40) 『황성신문』 1908년 4월 15일자.

41) 상세한 것은 민족문제연구소 엮음, 2009, 앞의 사전, 북악사학회 엮음, 1994, 『역사에 비춘 한국근현대 인물』, 백산출판사, 73~80쪽,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1993, 『친일파 99인』 (1), 돌베개, 137~144쪽, 『조선일보』 1999년 8월 6일자 『이규태 역사 에세이』 (23), 「좌부인 이야기」; 『太 』 第5卷 2號(1909년 6월) 「韓帝二妻を公許す」 참조.

42) 『황성신문』 1908년 5월 9일자.

43) 김효진, 2006, 앞의 책, 490쪽.

時太郎)이며 사가(佐賀) 출신으로 1906년 도쿄제국대학 법과를 졸업한 후 나고야(名古屋), 후쿠오카 등의 지방재판소 판사를 지내다가 1907년 한국 정부의 법부 서기관, 조선총독부 주임검사를 역임하고 유럽을 시찰한 후 1913년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⁴⁴⁾

● 法次晚餐 法部 次官 倉富勇三郎氏가 再昨日 下午 六時에 花月樓에서 晚餐會를 設 ㄷ고 法部, 法官養成所, 平理院, 漢城裁判所, 法典調査局, 新設 裁判所 各 高等官 五十餘名을 請邀宴待 ㄷ는디 該 次官이 演說 ㄷ 後 同 十一時에 散會 ㄷ었다더라.⁴⁵⁾

● 司法廳官制 司法權을 委任 ㄷ 後에 司法廳官制 ㄷ 法制局에서 審判中이러는데 該 官制 ㄷ 高等長官 一人을 親任으로 待遇 ㄷ 터이오 該 長官은 倉富 參與官이 被任 ㄷ다더라.⁴⁶⁾

● 法部職員의 官舍 法부와 及 各 裁判所 職員의 官舍 ㄷ 本年度에 次官과 及 奏任官의 官舍 三戶와 裁判所用 六戶와 監督官用 二戶와 書記, 部長, 區裁判所 判檢事用 等을 建築 ㄷ 터인디 其他 建地 ㄷ 南大門內와 西大門內와 其他 一個所로 決定 ㄷ었다더라.⁴⁷⁾

● 倉富歸國 司法權이 委任된 後에 日本政府의 實施 準備 及 施行制度 ㄷ 統監府에서 調査 ㄷ야 임의 完了되었는 故로 倉富 法部次官이 此를 携帶 ㄷ고 日本에 出發 歸國 ㄷ다더라.⁴⁸⁾

44) ヒマヤラ山人, 「京城辯護士界の人物」, 『朝鮮及滿洲』 第89號(1914년 12월), 73쪽.

45) 『황성신문』 1908년 5월 9일자.

46) 『황성신문』 1908년 9월 11일자.

47) 『황성신문』 1909년 3월 20일자.

48) 『황성신문』 1909년 8월 19일자.

● 兩氏歸國 既報와 如히 政府委員을 任命한 司法廳長官 倉富氏와 內部 次官 岡喜氏는 共히 來 十七日에 南門列車로 出發 歸國하기로 決定했다더라.⁴⁹⁾

한국에 온 구라토미의 행적에 관한 신문기사는 이상에서 보듯이 정작 한국인이 알고 싶은 사항은 보도하지 않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것들로 채워 있어서 일본인의 철저한 조선인 우민정책을 보여 주고 있다.

한일합방 이후에도 『매일신보』에는 구라토미의 이름이 자주 거명되는 기사가 많이 발견되지만 대부분 정례회의를 개최한다는 것, 시찰한 것, 업무협의차 본국에 출장한 이야기, 연회 등 우리들 한국인이 정작 알고 싶은 법률의 제정이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총독부에서 정례장관회의를 하면서 참석자의 명단을 열거하는가 하면,⁵⁰⁾ 기우치 주시로(木内重四郎) 전 농상공부 장관이 신병으로 사임하면서 송별회를 하는 기사 가운데 구라토미가 예사(禮辭)를 하고 기우치가 답사하는 의례적인 기사를 2단에 걸쳐 크게 보도하기도 하였다.⁵¹⁾ 또한 개성에 가서 삼정과(參政課)를 관람하는 등 기사⁵²⁾의 공식적인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신문의 보도태도는 구라토미가 귀국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한다⁵³⁾는 피상적이고 내용 없는 기사들로 아까운 지면만 허비할 뿐이었다.

한국에서 법무 차관으로서 재임 중 일본 신문 『京城日報』 1909년 1월 1일자 「名士의 新春所感」이란 칼럼에 쓴 글이 있다.⁵⁴⁾ 여기서 그는 “신년은 必至의 것, 특히 우리들과 같이 수십 회의 신년을 맞이하는 자에게는 신년을 맞이해도 각별한 기쁨은 없다. 그렇지만 평소 다루는 서책 집기 등을 정돈하

49) 『대한민보』 1910년 1월 15일자.

50) 『매일신보』 1911년 5월 27일자 「定例長官會議」.

51) 『매일신보』 1911년 8월 2일자 「木内氏送別會」.

52) 『매일신보』 1911년 9월 12일자 「倉富長官開城行」.

53) 『매일신보』 1913년 1월 15일자 「司法官會議主宰」.

고 이른 아침 단좌하여 도소(屠蘇)⁵⁵⁾주를 마시면서 스스로 심신을 함께 고치는 감정이 있는 것은 매년의 일로서 己酉 신년은 동양의 천지가 매우 평온하고 이목을 놀라게 하는 일 같은 것은 없을지라도 일본 국민을 위한 모든 사업은 내외에 그 얼마 허용될지 알지 못하며 나는 각자 신년에 함께 일층 원기를 고무하여 용진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 「소감」에서는 중요한 것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 국민을 위한 모든 사업은…”에서는 조선 식민지화 직전의 사정과 분위기를 바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⁵⁶⁾

1913년 귀국한 이후에도 조선과 관련을 가진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만년에 그는 회고하는 글을 남겼다. 즉 1940년 「조선 사법제도에 관한 私見」⁵⁷⁾이 그것이다.

구라토미의 한시비(碑)가 1940년 가모(賀茂)신사 경내에 세워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山郷皇祖社 川水又澄清
諸將幾申禱 親王曾致誠
昭昭神德耀 赫赫武威明
欣仰宸猷大 風宣掩八紘

이 비가 세워진 1940년은 일본 연호로 神武 紀元 2600년으로 마침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국민의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 각종 기념행사와 축전이 열렸는데 이 비도 그중의 하나라고 한다. 비 뒷면에는 사사(社司), 즉 신주(神主)인

54) 『京城日報』 제701호. 제4부 13면.

55) 도소주(屠蘇酒)란 불로장생의 효험이 있다는 술로 설날에 축하주로 마신다는 뜻.

56) 新藤東洋男, 2000, 앞의 책, 56쪽.

57) 원문은 주 49의 좌담회에 수록되어 있으며, 한국어 번역은 남기정 옮김, 1978, 앞의 책, 215~219쪽에 수록되어 있다.

구마가이 요시후미(熊懷嘉文)가 적은 건비(建碑) 설명이 새겨져 있다.⁵⁸⁾

4. 구라토미의 연구현황

구라토미에 관한 최근까지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伊藤 隆·季武嘉也 編, 『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2』(2005, 吉川弘文館), 88~89쪽이 가장 상세하다. 이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의 문헌과 자료를 추가하기로 한다.

먼저 「倉富勇三郎文書」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본관 4층 헌정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 문서에는 목록이 있으며 원자료와 마이크로필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문서는 33분야로 정리되어 있으며 크게 일기, 사법성·대심원관계, 조선사법관계, 제실제도심의회관계,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구라토미는 관료로 재직하던 1919년부터 1944년 12월까지 매일 일기를 썼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처럼 상세한 기록을 남겼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본 근현대사의 이면과 한 관료의 인간적 고뇌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라고 하겠다. 일본 국회에서는 일기를 비롯하여 문서 378점이 1974년에 헌정자료실에 '기탁' 되었다고 주어(주체)도 없이 보고하면서 하라 다카시(原敬)의 일기와 비교하고 있다.⁵⁹⁾ 일기는 너무 어려운 한문 초서로 작성되어 있어서 일반인은 판독하기가 어렵다. 한국에 재임하는 동안에는 일기를 쓰지 않아서 크게 기대할 것이 없지만 후일에 일부 회고를 적었을 정도로 생각된다.

일기의 번각(翻刻)은 교토대학대학원 문학연구과의 나가이 가즈(永井和) 교수가 오랫동안 이것을 교재로 강독과 연구를 해왔다(<http://www.bun.kyoto-u.ac.jp/~knagai/kuratomi/kuratomi.html>). 나가이 교수를 중심으로 한 倉富勇

三郎日記研究會 編, 『倉富勇三郎日記』(國書刊行會, 全9卷) 중 제1권(1919~1920년, 값 본체 20,000엔+세금)이 2010년 11월 말에 발간되었으며 매년 1권씩 발간할 예정이라고 광고를 내고 있다. 이 일기를 사용한 학술연구로서는 由井正臣 編, 『樞密院の研究』(2003, 吉川弘文館)가 있다. 또한 조선 황실 관계의 일기를 풀어서 작성한 오카모토 마키코(岡本眞希子)의 주석이 「未公開資料朝鮮總督府關係者錄音記錄」(4)(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編, 2003, 『東洋文化研究』 5)에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의 감수로 수록되어 있다.

나가이 교수는 2004년 9월 20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초청으로 「倉富勇三郎日記と植民地朝鮮」이란 제목으로 강의한 일이 있다.⁶⁰⁾

그 밖에 李榮娘, 「第1次憲政擁護運動と朝鮮の官制改革論」, 『日本植民地研究』 3(1999); 伊藤之雄, 「近代日本の君主制の形成と朝鮮」, 『法學論叢』 第154卷 4·5·6號(2004) 등이 있다.

사법성·대심원 관계 자료는 1902년에 취임한 대심원검사와, 계속하여 오사카와 도쿄의 공소원(控訴院) 검사장 시대의 자료 32점이 남아 있다. 이것은 현재에는 최고재판소가 관할하는 전국의 각 심급재판소의 인사와 예산을 포함한 사법행정과, 현재에도 법무성 소관인 감옥이나 검사국(檢事局)에 대한 자료들이다. 사법행정을 둘러싼 정치는 연구가 희박한 분야이며 그 때문에 구라토미 문서의 존재는 귀중하다.

조선 사법 관계 자료는 28점이 남아 있다.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일 본인 사법관료를 한국에 대량으로 보내면서 격려한 연설 요지를 받아 적은 기록에서 시작하며 서류 맨 위에는 (秘)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법의 형식'을 취한 식민지 지배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통감부 참여(參與)로서 구라토미 본인이 작성한

58) 이상은 浮羽町史編集委員會, 1988, 『浮羽町史』 下卷, 769쪽에 의함.

59) 桑原伸介, 1974, 『倉富勇三郎文書』, 『國立國會圖書館月報』 第157號, 14쪽.

60) 강의는 이승엽(李昇燮) 씨가 통역하였으며, 원문(일본어)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일본재판소설치의견」이라든가, 대한제국 법무차관으로서의 업무에 관련된 「법부 정무 보고 초안」이나 「법부 장관 훈시」 등, 기타 한일합병 이후에 작성된 「조선민사령 요지」 같은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구라토미가 한일합병 전에는 1907년부터 대한제국 정부의 법무 차관과 한국통감부 참여를 겸했고, 합병 후에는 조선총독부 사법부 장관을 1913년까지 지냈기 때문에 다른 입장에서 6년간을 근무했다고 아사노 도요미(淺野豊美)는 적고 있는데, 입장의 변화는 발견하기 어렵고 결국 일관된 식민지 사법정책을 수행한 기록이라고 보겠다. 이 시기의 조선 사법제도에 관한 구라토미의 글은 『朝鮮公論』,⁶¹⁾ 『朝鮮及滿洲』,⁶²⁾ 『滿韓之實業』 등과 같은 잡지에도 몇 가지의 글이 실려 있다.

제실제도 심의회 관계 문서는 하타노 요시나오 궁내대신(波多野敬直 宮内大臣)의 상주문을 중심으로 18점의 자료가 있다. 이것을 사용한 연구로는 西川誠, 「大正後期皇室制度整備と宮内省」, 『年報・近代日本研究 20 宮中・皇室と政治』(1998, 山川出版社); 梶田明宏・内藤一成, 「資料紹介『倉富勇三郎日記』—「皇族ノ降下ニ關スル施行準則」關係抄録(大正8年)—」, 『書陵部紀要』 52(2000)가 있다. 또한 伊藤之雄, 『政黨政治と天皇』, 『日本の歴史』 22(2002, 講談社)에서는 구라토미의 일기를 사용하여 대정정변(大正政變)으로부터 궁중 모 중대사건에 이르는 시기의 정치사적 전개와 내적 원인이나 주요 액터의 세력배치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구라토미는 1920년부터 취임한 추밀고문관으로서의 직책에 관련된 자료는 1926년부터 1934년까지 8년여 동안 추밀원 의장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보기 어렵다.

61) 이 잡지의 총목차는 한일비교문화연구센터 편저, 2007, 『조선공론 총목차·인명색인』, 어문학사로 발간되었다. 구라토미의 글은 「朝鮮司法制度の沿革及現状」(제1권 4호, 1913년 7월)이 있다.

62) 이 잡지의 총목차는 임성모 엮음, 2007, 『조선과 만주 총목차·인명색인』, 어문학사로서 발간되었다. 구라토미의 글은 「朝鮮人犯罪の變遷」(제73호, 1913년 8월), 「倉富法務次官を訪ふ」(제11호, 1909년 1월) 등이 있다.

한국 측에서의 구라토미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의 단문인 「조선사법제도에 관한 사건」(1935년 7월 30일 구라토미 유자부로稿)의 번역이 남기정(南基正) 옮김, 『일제의 한국사법부 침략실화』⁶³⁾(1978, 육법사), 215~219쪽에 수록되었으며, 최근 문준영(文竣暎) 교수에 의한 자료 소개 「통감부재판소 설치에 관한 자료—倉富勇三郎와 梅謙次郎의 의견서—」⁶⁴⁾가 있을 정도이다. 문 교수는 「16. 한국에서의 재판사무에 관한 건」⁶⁵⁾을 우메 겐지로의 「한국에서의 재판제도 개정에 관한 卑見」과 아울러 소개하고 있다. 우메와 관련하여 임상혁, 「1908년 「민사소송법안」의 성립과 그 성격」⁶⁶⁾이 있다.

다음에는 우리들의 관심사인 조선사법 관계 자료를 자세히 보기로 한다.

5. 한국 사법에 관한 기록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倉富勇三郎文書目録」은 전체 16면이며 그 내용은 [부록 1]과 같다. 여기서는 이 가운데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된 「30. 朝鮮司法關係書類」의 목록만을 본다.

1. 陸軍將校招待席上 伊藤 統監演說要領 筆記 蒔菴板 一綴
2. 韓國法官招待席上 伊藤 統監演說要領 筆記 蒔菴板 一綴
3. 司法官招待席上 伊藤 統監演說要領 筆記 明治 42年 4月 21日

蒔菴板 一綴

63) 이 책은 「朝鮮司法界の往事を語る座談會」(1940년 8월 15일開催), 『司法協會雜誌』 第19卷 10・11號 別冊을 번역한 것이다.

64) 『法史學研究』 제36호, 2007, 331~366쪽에 수록.

65) 원문과 번역은 354~359쪽.

66)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제14권 제1호, 2010, 375~393쪽에 수록.

4. 司法官ニ對スル總督訓示案	大正 2年	墨書 一綴
5. 日本裁判所設置意見	墨書 一綴	
6. 法部官制案	墨書 一綴	
7. 法官學校官制案	墨書 一綴	
8. 法部政務報告案	隆熙 2年	墨書 一綴
9. 法部 所管 政務狀況報告書案	隆熙 2年	墨書 一綴
10. 司法 及 監獄事務概要 自 明治 43年 1月 至 明治 43年 3月 17日		稿 謄寫
11. 朝鮮民事令要旨	墨書 一綴	
12. 朝鮮刑事令 要旨	墨書 一綴	
13. 法部 長官 訓示	墨書 一綴	
14. 裁判所職員定員 意見書案	明治 43年	墨書 一綴
15. 歸化法ノ大體ニ就テノ意見	蒟蒻板 一綴	
16. 朝鮮司法事務ニ關スル新制度ノ概觀	明治 45年	墨書 一綴
17. 韓國ニ於ケル司法 及 監獄ノ制度	明治 43年	墨書 一綴
18. 韓國司法制度ノ概觀 倉富 韓國 法部 次官	墨書 一綴	
19. 韓國ニ於ケル裁判事務ニ關スル法令案	墨書 一綴	
20. 朝鮮ノ司法制度 所見 草稿	墨書 一綴	
21. 朝鮮司法制度ノ沿革 及 現狀ノ概要	大正 2年	墨書 一綴
22. 朝鮮ノ司法制度ニ關スル私見	昭和 十五年	ペン書
23. 統監府 司法警察官 官制 謄寫		
24. 治安警察ニ關スル制令案ニ對スル意見	明治 43年	墨書 一綴
25. 朝鮮總督府 官制	蒟蒻板 一綴	
26. 朝鮮總督府 官制 改正審案	大正 3年	墨書 一綴
27. 朝鮮總督府 警察官署 官制	墨書 一綴	
28. 朝鮮司法關係 雜資料	一綴	

이미 보았듯이 이 중 「朝鮮司法制度에 관한 私見」과 「16. 한국에서의 재판 사무에 관한 건」만이 한글로 번역되었을 뿐이며 나머지는 아직 소개도 제대로 되지 않은 실정이다. 구라토미의 원문이 한자로 쓴 붓글씨인데다가 또 백여 년 전의 일본어이기 때문에 판독하고 번역하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문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 사람이 힘을 합하여 노력하면 모두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요컨대 「朝鮮司法關係書類」는 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도 아니고 또 개중에는 초안을 메모한 것에 불과한 서류도 있지만 통감부시대부터 조선총독부 시대에 걸쳐 한국의 법체계를 기술적으로 붕괴시키면서 해체시킨 작업을 일관해서 추진한 기록인 동시에 증거이기도 하다. 일본 자체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무질서한 시기에 문명국가인 조선을 통치하기에는 이토와 구라토미 모두 힘겨 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이런 기록이나마 변변히 모아 두지 못한 우리로서는 몇 조각 안 되는 문서로서 법의 너을을 쓴 식민지 지배의 가면을 벗기는 동시에 피지배자로서 억압당하고 유린된 실상을 똑똑히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단행본(사전류)

- 國立公文書館所藏, 1997, 『樞密院高等官履歷』第5卷, 東京大學出版會, 401~425쪽.
- 伊藤 隆·季武嘉也編, 2005, 『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2』, 吉川弘文館, 88~89쪽.
- 『20世紀日本人名事典』, 2004, 日外アソシエーツ, 938쪽.
- 日本史廣辭典編集委員會編, 2000, 『日本史人物辭典』, 山川出版社, 326쪽.
- 白井勝美他編, 2001, 『日本近現代人名辭典』, 吉川弘文館, 382쪽.
- 『新訂増補 人物レファレンス事典』, 2000, 「明治·大正·昭和(戰前)編 あ~し」, 日外アソシエーツ, 744쪽.
- 『日本人名大辭典』, 2001, 講談社, 694쪽(倉富恒二郎).
- 『コンサイス 日本人名事典』第4版, 2001, 三省堂, 486쪽.
- 『新潮日本人名事典』, 1991, 新潮社, 650쪽.
- 『政治家人名事典』, 1990, 日外アソシエーツ, 191쪽.
- 『國史大事典』第4卷, 1984, 吉川弘文館, 916쪽.
- 『福岡縣百科事典』上, 1982, 西日本新聞社, 612~613쪽.
- 朝日新聞社編, 1990, 『現代日本 朝日人物事典』, 6~7쪽(増田知子 집필).
- 奏郁彦編, 1981, 『戰前期日本官僚制の制度·組織·人事』, 東京大學出版會, 93쪽.
- 『日本人名大事典』, 1979, 平凡社.
- 阿部薫編, 1935, 『朝鮮功勞者銘鑑』, 民衆時論社·朝鮮功勞者銘鑑刊行會刊, 18쪽
(이 책은 『朝鮮人名資料事典』第4卷, 2002, 日本圖書センター로 改題하여 復刻).
- 山浦貫一, 1926, 『政局を繞る人々』, 純官僚型, 四海書房, 325쪽(이 책은 『日本人物情報大系』第26卷, 2000, 皓星社, 458쪽에 復刻).
- 『日本法曹界人物事典』第1卷[司法篇], 1995, ゆまに書房, 23쪽.

2. 논문

- 「倉富勇三郎と朝鮮植民地化の事業」, 新藤東洋男, 2000, 『浮羽地方の近現代史』, 浮羽-三井教育耳納會, 46~57, 76~84쪽.
- 岡本眞希子, 2003, 「樞密院と植民地問題—朝鮮·臺灣支配體制との關係から」, 由井正臣編, 『樞密院の研究』, 吉川弘文館, 141~191쪽.
- 桑原伸介, 1974, 「倉富勇三郎文書」, 『國立國會圖書館月報』第157號, 14~15쪽.

[부록]

倉富勇三郎文書目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倉富勇三郎文書目錄」은 전체 16면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大正 八年 日記
2. 大正 九年 日記
3. 大正 十年 日記
4. 大正 十一年 日記
5. 大正 十二年 日記
6. 大正 十三年 日記
7. 大正 十四年 日記
8. 大正 十五年 日記
9. 昭和 二年 日記
10. 昭和 三年 日記
11. 昭和 四年 日記
12. 昭和 五年 日記
13. 昭和 六年 日記
14. 昭和 七年 日記
15. 昭和 八年 日記
16. 昭和 九年 日記
17. 昭和 十年 日記
18. 昭和 十一年 日記
19. 昭和 十二年 日記
20. 昭和 十三年 日記
21. 昭和 十四年 日記
22. 昭和 十五年 日記
23. 昭和 十六年 日記

24. 昭和 十七年 日記
25. 昭和 十八年 日記
26. 昭和 十九年 日記
27. 充紳
28. 皇室關係書類
29. 司法關係書類
30. 朝鮮司法關係書類
31. 其他雜資料
32. 乞骸始末一, 二 (複寫本) [原本 · 倉富氏藏] 二冊 (* 사인펜으로 缺番)
33. 追加資料
 1. 津田三藏事件裁判所轄에 대해서 墨書 一綴
 2. 裁判所構成法施行前後의 回顧 硯書 一綴
34. 乞骸始末 (32의 原本) 一冊
(平成 十一年 倉富의 曾孫 細嶋郁子氏로부터 購入)